

## 2-1. 육아휴직

### 가. 근거

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제1항제7호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5조제1항제6호

**나. 휴직사유:**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

### 다. 휴직의 요건

#### 1) 휴직 대상

- 가)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·여 교육공무원
- 나) 육아휴직 가능 대상 아동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휴직 가능함

※ 만 8세 이하는 만 8세가 속하는 학기말까지 휴직 가능을 의미

- 2016.5.21. 생일인 경우 : 2024.5.21.부터 2025.5.20.까지 만 8세에 해당 되므로 만8세 종료일인 2025.5.20.이 포함되는 학기말인 2025.8.○○(교육 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)까지 육아휴직 가능(단, 자녀당 3년의 휴직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)
- 2016.9.21. 생일인 경우 : 2024.9.21.부터 2025.9.20.까지 만 8세에 해당 되므로 만8세 종료일인 2025.9.20.이 포함되는 학기말인 2026.2.28.까지 육아휴직 가능(단, 자녀당 3년의 휴직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)

※ 초등학교 2학년은 2학년 2학기가 끝나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를 의미함

- 다) 부부(교육)공무원의 경우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각 혹은 동시 휴직 가능
- 라)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·여 교육공무원,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여자 교육공무원
- 마) 쌍둥이 자녀의 경우,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가능

#### 2) 자녀의 범위: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

- 가)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
- 나)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

### 라. 휴직기간 및 횟수

- 1) 법정휴직기간: 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.(법 제45조제1항제6호)